

## 오산시 장애아동 재활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

제정 2020년 11월 6일 조례 제1849호  
일부개정 2024년 5월 17일 조례 제2167호  
(행정기본법 일부개정에 따른 만 나이 규정  
오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)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지속적인 치료와 교육이 필요한 성장기 장애아동에게 재활치료비를 지원하여 장애의 조기발견 및 완화에 도움을 주고, 장애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, 또한 기능향상 및 행동발달 향상을 위한 치료가 필요한 장애아동 및 장애가 예견되어 발달재활서비스가 필요한 18세 미만의 아동을 위한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공공재활치료시설을 이용하는 일반치료대상자들의 재활치료비를 지원하여 장애아동 가구의 치료비용 부담 경감을 통한 치료기회 확대 및 생활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24. 5. 17>

**제2조(정의)**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“장애아동”이라 함은 「장애아동 복지지원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아동을 말한다.
2. “재활치료비”라 함은 공공재활치료시설에서 재활치료를 목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.
3. “공공재활치료시설”이라 함은 오산시에서 설치·운영하는 장애인 재활치료시설을 말한다.

**제3조(지원대상자)** 재활치료비 지원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지원대상자를 포함한 가족이 오산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. <개정 2024. 5. 17>

1. 장애아동
2. 장애가 예견되어 재활치료가 필요한 18세 미만 아동
3.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이상 20세 미만인 장애인 및 장애가 예견되어 재활치료가 필요한 사람

## 오산시 장애아동 재활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

**제4조(재활치료비 지원)** 오산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활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**제5조(지원금 신청방법)** ① 재활치료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장애아동 재활치료비 지원신청서와 장애인 증명서 또는 발달재활서비스가 필요하다는 검사자료(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, 발달검사결과서, 진단서, 발달센터의 발달지연 소견서 중 한 가지)를 공공재활치료시설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가 신청할 수 있다.

**제6조(지원 및 운용방법)** 재활치료비의 지급, 결재, 정산 등 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「오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
**제7조(지급결정 및 지급방법)** 공공재활치료시설에서는 매월 재활치료비 지급대상자를 결정하며, 부적격자에 대하여는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**제8조(환수조치)**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.

**제9조(시행규칙)**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부칙** <2024. 5. 17 조례 제2167호, 행정기본법 일부개정에 따른 만 나이 규정  
오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